

교원 책임시간 및 강의로 지급에 관한 규정

제 정 : 2026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61조에 따라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교원의 책임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 책임시간 설정 및 강의로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책임시간) 본교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교원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전임교원 : 12시간
2. 강의전담교원(외국인 교원 포함) : 12시간

제4조(책임시간의 감면) ① 보직을 맡은 교원의 경우 주당 책임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 다만, 교원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하는 경우 상위 보직을 기준으로 책임시간을 감면하며, 감면시간이 동일한 보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하지 아니한다.

1. 부총장 : 책임시간 전체
2. 처장 : 6시간
3. 대학원장, 학부장, 산학협력단장 : 3시간
4. 총사감 : 1시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시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
2. 2년 이내 정년퇴직이 예정된 교원
3. 본교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
4. 기타 총장이 책임시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보직 발령 등의 사유로 학기 중 책임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교원에게 유리한 책임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5조(책임시간 미충족에 따른 조치) 교원이 제3조에서 정한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기별 미달된 책임시간만큼 초과강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학기 급여에서 공제하며, 교원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책임시간이 미달된 학기가 포함되는 경우 업적평가에 반영한다.

제6조(강의시간) ① 이론 수업의 강의시간은 1학점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.

② 실습·실기 및 이론·실습 병행 교과목의 강의시간 계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에 따라 따로 정한다.

③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강의는 강의시간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강의료의 지급) ①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

1.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본교에서 특강을 하는 경우 특별강의료 지급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2. 전임교원의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주당 강의시간이 제3조의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비례하는 초과강의료는 매 학년도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3. 비전임교원의 경우 임용계약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한다. 단, 강사의 시간강의료는 매 학년도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강의료는 학기당 지급액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,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